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정관 제24조 내지 제24조의5 및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8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자 4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위촉) ① 교내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직원회의에서 추천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총학생회 및 총원우회에서 추천한다.

제5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제2조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평의원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 (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요구권) ① 평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업무 현황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

2.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평의원회 회의에의 출석 및 의견 개진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처 기획과(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평의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 추천을 위해 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